

[]연료
자동차 []첨가제 검사신청서
[]촉매제

| 접수번호 | 접수일 | 처리기간 | 20일 |
|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|-----|
| 신청자 | 업체명 | 사업자등록번호 | |
| | 사무실 주소 | 사무실 전화번호 | |
| | 대표자 성명 | 생년월일 | |
| | 대표자 주소 | 전화번호 | |
| 신청 내용 | 제 조 자 주 소 · 성 명 | | |
| | 제 조 지 또는 생 산 지 | | |
| | 시 료 명 및 종 류 | | |
| | 시 험 항 목 | | |
| | 제 조 법 또는 참 고 사 항 | | |

「대기환경보전법」 제7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0조의3제1항에 따라 자동차연료·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검사를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국립환경과학원장
검 사 기 관 장 귀하

| | | |
|------------------|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의뢰인(대표자) 제출서류 | 1. 검사용 시료 2. 검사 시료의 화학물질 조성 비율을 확인할 수 있는 성분분석서 1부 3. 최대첨가비율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1부(첨가제 검사신청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.) 4. 제품의 공정도 1부(촉매제 검사신청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.) ※ 「대기환경보전법」 제74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검사기관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(「부가가치세법」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사본)을 첨부합니다. | 수수료 「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」에 정하는 금액 |
|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| 1. 법인 등기사항증명서(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) 2. 사업자등록증명 또는 주민등록표초본 | |

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

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 *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처리절차

